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76

발의연월일: 2022. 7. 8.

발 의 자:노용호·강민국·김상훈

김영식 · 김용판 · 배현진

유경준 • 조명희 • 지성호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6개(2017. 6월 기준)에서 622개(2021. 6월 기준)로 증가하였으나,최근 1년간 회의를 3회이하로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에 가까운 310개이며,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71개에 달하는바,이처럼 위원회의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낭비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

록 하고, 모든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를 막고, 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실을 기하려 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 제 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존속기한

제11조제1항 중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을 "행정위원회를"로, "법률에"를 "법령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을 "때에는 존속기한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등 제외하고는 2년마다"를 "2년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2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u>3. 존속기한</u>		
경우에 한한다)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u>행</u>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	<u>정위원회를</u>		
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			
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	<u>법령에</u>		
을 정하여 <u>법률에</u> 명시하여야			
한다.			

2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
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
하여 법령에 '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	기한은 자문위원
회등의 목적 달	발성을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
정하여야 하며,	, 원칙적으로 5년
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u>제2항에</u>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 위원회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등을 제외하고는 2 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 <u>때에는</u>	존속기한
<u> </u>		
③		- <u>2년마다</u>
④·⑤ (현행	과 같음)